

대 전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03가단55001 채무부존재확인
원 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
서울 강남구 00 891-10 00금융센터 7층
대표이사 장00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윤배
피 고 권00
대전 서구 00동 000아파트 000동 000호
변 론 종 결 2004. 3. 9.
판 결 선 고 2004. 3. 30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1991. 10. 12.경 소외 권00과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(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위 권00은 보험계약의 만기(1994. 10. 12.경) 이전인 1993. 5. 30. 사망하였고, 원고는 1995. 1. 10.경 상속인 중 1인인 권00의 처 장00에게 만기보험금 전액인 13,475,138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피고는 권00의 딸로서 상속인 중 1인인데,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03. 8. 7.경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른 만기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.

[증 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의 1 내지 갑3의 3, 을1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원고는,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만기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(1994. 10. 12.경)가 도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3. 8. 7.경에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므로,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.

3. 결론

따라서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,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위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000 _____

보 험 계 약 의 표 시

- 보험종목 : 새가정복지보험 (증권번호 : 000000000)
- 보 험 자 : 원고
-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: 권00
- 피보험자 : 권00
- 보험기간 : 3년
- 주보험금 : 11,600,000원. 끝.